

	<h2 style="margin: 0;">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운영규칙</h2>	규정번호	4-0-6
		제정일자	2011.08.02
		개정일자	2014.04.01
		개정번호	Ver .2 총페이지 3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공학기술교육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우수한 공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계 수요 및 우리대학 특성에 부합한 특성화된 공학기술교육 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학기술교육혁신 사업방향 수립
2. 공학기술교육혁신을 위한 사업 수행
3. 공학기술교육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
4. 공학기술교육혁신 관련 세미나 및 학술활동 지원
5. 창의공학 교육과정 심의·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소재) 센터는 본 대학에 둔다.

제 2 장 조 직

제4조(구성) 센터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.

1. 센터장
2. 직원 및 연구원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와 관련된 업무전반을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직원 및 연구원) 센터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둔다.

제 3 장 위 원 회

제7조(위원회) 센터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와 창의공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공학 교육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창의공학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구성과 임기) ① 위원회 및 창의공학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창의공학위원회는 교무부처장, 산학협력부처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회 및 창의공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 및 창의공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.

④ 위원회 및 창의공학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, 위원장이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.

제9조(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 및 창의공학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, 장소 및 출석위원의 날인
2.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

제10조(위원회 임무)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칙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11조(창의공학위원회 임무) 창의공학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
1. 창의공학 교육과정 심의에 관한 사항
2. 창의공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3. 창의공학 교육과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

제12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.

② 위원회 및 창의공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13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제10조 3호에 따라 위원회 및 창의공학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.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진행된 회의나 기타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심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